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45

발의연월일: 2022. 2. 3.

발 의 자:윤건영·고민정·김남국

김영호 · 김회재 · 문정복

오영환 • 윤영찬 • 최인호

최종윤 • 한병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3조제2항 중 제2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해 어떤 단체가 정치단체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해당 표현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부분 역시 개념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 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근무시간 내로 한정하여 금지 한다면 정치적 중립과 업무전념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①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행위가 복무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②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는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준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안번호 제6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을 "정치단체(「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근무시간 중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가.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나.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 다.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라.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는 것
 - 마. 다른 사람에게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 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제89조의3제2호 중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3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2. 정치단체(「군인의 지위 및 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가입하-----<신 설> 2의2. 근무시간 중 선거에서 특 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 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3. ~ 7. (생 략)

③ • ④ (생 략)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 제 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 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 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2.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 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 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 나.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 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 <u>는 것</u>
- 다.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라.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 하게 하는 것
- 마. 다른 사람에게 정치단체 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 동을 하는 것
- 3. ~ 7.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1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
무의무 위반)	

- 1. (현행과 같음)
- 2호의2, 제3호-----

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 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 4. (생 략)

0 4 /킨케퀴 키 ()
3.•4. (현행과 같음)